

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

심 사 보 고

2003.4.27.(화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4년 4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4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4. 4. 23 :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)

가. 제안이유

- 도내 소프트웨어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도가 운영하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이관함에 따라,
- 당해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사용하던 도유 건물을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고자,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-6(청주의료원 구병동)
- 규 모 : 연면적 4,368㎡(1,321평)중 2~3층 2,166㎡(655평)
- 용 도 : 도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의 창업 보육 및 경영지도
- 조 건 : 5년간 무상으로 하되 필요시 기간연장
- 신청인 :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(도 출연법인)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만)

-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충청북도에서 위탁 운영하던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폐지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,

그동안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

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-6 (청주의료원 구병동) 도유 건물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

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

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